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INVESTMENT & BUSINESS GUIDE

 인도네시아 투자법제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인도네시아 투자법제

發刊辭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 한-ASEAN FTA를 체결·발효하고 꾸준히 교역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한국의 5대 교역 상대였던 ASEAN은 이제 중국에 이은 2대 교역 경제권으로 급부상하였고, 미국에 이은 2대 해외 투자 대상 지역이자 중동 다음으로 큰 한국의 2대 건설 수주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중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와 한반도의 9배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보유한 국가로서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G-20 회원국인 경제대국입니다. 최근 세계적 건설 붐을 맞이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GDP 규모가 전 세계 16위 수준인 인도네시아가 2030년경에는 독일, 영국을 제치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아시아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였습니다.

‘세계 천연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인도네시아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성장에 있어 큰 매력을 지닌 시장으로 현재 1,3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대 교역국이자 ASEAN 국가 중 제1위 교역국으로, 조만간 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투자 증가 및 전방위적 경제협력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해외 진출의 애로사항으로 ‘현지 정보 부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 진출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하고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ASEAN 국가 중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가이드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 중국진출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CIS 국가 등을 주제로 총 7권의 비즈니스가이드를 발간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비즈니스가이드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지법령 정보와 구체적 자문사례 등을 담은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있거나 새로이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참고하고 알아두어야 할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현지 법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비즈니스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증보해나가는 한편, 일본, 인도, 중남미, 중동국가 등에 대한 비즈니스가이드도 새롭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집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로펌의 변호사 분들을 비롯하여 본서의 기획 및 발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국제법무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3. 1.

법무부장관

권대권

목 차

I . 외국인투자법제	11		
1. 투자법 개관	11		
2. 투자조정청(BKPM)	12		
2.1 연혁	12		
2.2 역할	12		
2.3 투자신청 창구 단일화	12		
3. 투자금지 및 제한	13		
4. 투자우대(Incentive)	18		
4.1 신규투자 관세 감면	18		
4.2 특정분야 및 지역에 대한 세금우대	18		
4.3 외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면제	19		
5. 투자법인 설립절차	19		
5.1 절차 개요	19		
5.2 상호사용신청	20		
5.3 투자조정청에 대한 신청과 승인	20		
5.4 설립정관	20		
5.5 소재지 증명(Domicili)	21		
5.6 납세번호 등록	21		
5.7 계좌개설 및 자본금납입	21		
5.8 법무부승인, 법인등록 및 관보고시	22		
II . 회사법제	23		
1. 회사법의 연혁	23		
1.1 상법과 주식회사법의 분리	23		
1.2 2007년 신 주식회사법 제정	23		
2. 회사의 종류	23		
3. 주식회사의 설립	24		
3.1 발기인	24		
3.2 최소자본금	24		
3.3. 현물출자	25		
		3.4 주식	25
		4. 주식회사의 기관	28
		4.1 주주총회	28
		4.2 이사회	30
		4.3 감사위원회	33
		5. 회사에 대한 조사	34
		6. 해산과 청산	34
		6.1 해산	34
		6.2 청산	35
		III . 금융법제	36
		1. 외환거래	36
		2. 해외차입의 신고	36
		IV . 부동산법제	41
		1. 토지제도 개관	41
		2.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	41
		2.1 소유권(Hak Milik)	41
		2.2 경작권(Hak Guna Usaha)	42
		2.3 건축권(Hak Guna Bangunan)	43
		2.4 사용권(Hak Pakai)	44
		2.5 집합건물소유권(Hak Milik Atas Satuan Rumah Susun)	45
		3. 토지 증명서(Sertipikat Tanah)	46
		V . 비자	47
		1. 단기체류허가(KITAS)	47
		1.1 관련 법령	47
		1.2 관련기관(허가승인자)	47
		1.3 단기체류허가 종류 및 신청조건	47
		1.4 진행절차	48
		2. 노동허가(IMTA)	48
		2.1 법률	48
		2.2 관련기관(허가승인자)	48

목 차

2.3 신청서류	48	4.3 재정	59
3. 현지인고용의무	49	5. 노동분쟁 해결절차	59
Ⅵ. 노동법제	50	Ⅶ. 조세	60
1. 노동법 및 주요 법률	50	1. 법인세	60
2. 근로관계	50	1.1 납세 의무자	60
2.1 고용형태	50	1.2 적용세율	61
2.1.1 정규직	50	1.3 손금불산입 비용	61
2.1.2 계약직	51	2. 개인소득세	62
2.1.3 업무위탁(용역, 하도급)	52	2.1 납세 의무자	62
2.2 급여	52	2.2 적용세율	62
2.2.1 급여항목	52	2.3 소득공제	63
2.2.2 최저임금제	53	3. 원천징수세	63
2.2.3 무노동 무임금	53	4. 부동산세제	65
2.3 근로연령	53	4.1 토지 및 건물세	65
2.4 근로시간	53	4.2 부동산 거래세	65
2.5 연차휴가	54	4.3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의무사항	66
2.6 사회보장(JAMSOSTEK)	54	5. 부가가치세	66
3. 근로관계 해지	54	5.1 납세의무자	66
3.1 자진퇴사	55	5.2 과세대상	66
3.2 정년	55	5.3 세율과 과세표준	68
3.3 사망	56	5.4 부가가치세 신고	68
3.4 질병 및 장애	56	5.5 부가가치세 징수구조	68
3.5 중대/경 과오로 인한 퇴사	56	5.6 부가가치세 환급	69
3.6 사법기관에 의한 구속	57	6. 특별소비세	69
3.7 회사 소유주 변경	57	7. 수입관세	70
3.8 폐업, 파산, 경영합리화로 인한 해고	57	7.1 수입관세율	70
3.9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	57	7.2 수입면허	70
4. 노동조합	58	8. 불복절차	71
4.1 요건	58	8.1 이의제기	71
4.2 활동	58	8.2 소송제기	71

목 차

9. 이중과세방지협약	72
Ⅷ. 분쟁해결	73
1. 사법제도	73
1.1 법원의 종류	73
1.2 심급제도	73
1.3 민사법	73
2. 중재제도	74
3. 외국판결/중재판결의 집행문제	74
부록 : 투자등록신청서 양식	78

I. 외국인투자법제

1. 투자법 개관

인도네시아는 1967년의 외국투자법, 1968년의 국내투자법에 의하여 각 외국투자와 내국투자를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여 오다가 2007년 외국투자¹와 내국투자²를 통합하여 새로운 투자법(Undang-Undang Penanaman Modal 25/2007, 이하 “투자법”)을 제정하여 현재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행 투자법은 전문 및 17개장,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 투자원칙, 투자기업형태, 투자자대우, 사업분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³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라 하며, 국내자본⁴에 의해 설립된 국내기업(Penanaman Modal Dalam Negeri/PMDN)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PMA는 주식회사법(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eroan Terbatas)에 따른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투자법상의 투자인허가 등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업무는 후술하는 투자조정청(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Indonesia; BKPM)이 전담하고 있다.

¹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가 외국자본을 투자하거나 국내자본과 합작하여 투자(외국투자를 받은 회사가 다시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²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자유소가 없는 순수 국내법인 또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³ 외국자본이란 외국 국가, 외국인 개인, 외국기업, 외국인 법인이 소유한 자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의 자본이지만 그 자본 전부나 일부가 외국인에 의하여 투자된 자본을 말한다(투자법 제8조).

⁴ 국내자본이란 인도네시아 국민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 국내법인(외자기업제외)이나 비법인이 소유한 자본을 말한다(투자법 제9조).

2. 투자조정청(BKPM)

2.1. 연혁

인도네시아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외국자본투자결정청(Badan Pertimbangan Penanaman Modal Asing)이 1967년 설립되었다. 외국자본투자결정청은 다음해인 1968년 자본투자기술위원회(Panitia Teknis Penanaman Modal)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투자조정청은 1973년 자본투자기술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투자조정청은 1998년에 국영기업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가 2002년 국영기업청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조직이 되었고, 2007년 새로운 투자법 하에서 국내외 투자에 관한 관할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2 역할

투자조정청은 외국투자 기업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는 특별기관이다. 투자조정청의 조직은 청장과 부청장, 그리고 각 국 사무를 조정하는 사무총장 및 6개의 국장(투자계획국, 투자환경발전국, 투자촉진국, 투자협력국, 투자서비스국, 투자시행감독국)과 각 국에 속하는 담당업무별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조정청은 국내외 투자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격차를 개선하고, 실업률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투자조정청은 외자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투자사업승인(SP-PMA), 수입관세 감면(Master List), 외국인노동자사용계획승인(Manpower Plan) 등에 대한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조정청은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금지 및 제한 분야목록(Negative List)에 따라 외국투자를 규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3 투자신청 창구 단일화

과거에는 투자와 관련된 업무들이 각 행정부처 및 관계기관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2009년

에 대통령령(Kputusan Presiden Nomor 27 Tahun 2009)이 제정되어 각 행정부처 및 관계기관에 분산되어 있었던 투자인허가 수속을 한 곳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창구 단일화 통합 서비스(Pelayanan Terpadu Satu Pintu)가 실시되고 있다. 투자신청은 우선 투자조정청에 투자신청서를 접수하고 투자승인(Surat Persetujuan penanaman Modal Asing)을 받아, 아래 제5항과 같이 투자법인설립절차를 거쳐 투자 및 법인설립을 마치고, 다시 투자조정청으로부터 고정사업 허가서(Izin Usaha tetap)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전자 시스템에 의한 투자 인허가·정보 서비스(Sistem Pelayanan Informasi dan Perizinan Investasi Secara Elektronik)시스템이 구축되어 투자자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투자에 관한 인허가 수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⁵

3. 투자 금지 및 제한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투자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2007년에 투자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투자금지 및 조건부 개방업종의 목록⁶에 대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졌고, 2010년에는 새로운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t Nomor 36 Tahun 2010)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령의 투자금지 및 제한목록은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lasifikasi Baku Lapangan Indonesia)를 토대로 작성이 되는데, 투자금지 및 제한목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100%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2010년 투자금지 및 제한목록에 따르면 마약, 화학병기, 무기, 무선/위성 사업, 알코올 음료 제조, 카지노와 도박장 경영 등의 경우에는 내자와 외자를 불문하고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삼림벌채, 택시/버스 영업, 국내해운, 민영텔레비전/라디오 방송, 신문/잡지 발행, 영화사업 등의 경우에는 외자투자가 금지되고, 기타 사업분야에 대하여는 투자지분 제한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⁵ 이 시스템은 2010년 1월 바탐의 자유무역 지역 및 자유무역항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⁶ 이를 보통 Negative List라고 한다.

2010년 투자금지 및 제한목록에서는 투자제한을 다음 열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중소기업영역으로 분류된 것,
- ② 조합(Partnership)형태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 ③ 외국인지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
- ④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 ⑤ 특별허가가 필요한 것,
- ⑥ 100% 지역자본만이 할 수 있는 것,
- ⑦ 외국인지분 제한이 있고, 특정 지역으로 한정된 것,
- ⑧ 외국인지분 제한이 있고, 특별허가가 필요한 것,
- ⑨ 100% 지역자본만이 할 수 있고, 특별허가가 필요한 것,
- ⑩ 아세안국가의 자본에게만 개방된 것으로 지분과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

이 중 ①, ②⁷, ⑥, ⑨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조건의 성격에 비추어 외국인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⑩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세안국가의 자본에 대하여서만 개방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직접투자⁸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금지, 제한 분야에 관하여 각 산업별로 주요한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금지 사업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사업분야	
사업분야		사업 분야	외자최대지분
농업	대마초 재배	농업	(농림부장관 추천서 필요) 49% : 유전자변형 농업, 옥수수, 감자, 고구마경작 95% : 면적 25 Ha이상의 농장
산림업	1) 멸종위기 동물, 식물, 국제무역내 Appendix I Convention 분류에 포함되는 멸종위기 어류판매 2) 천연산호사용	산림업	49% 또는 51% 까지 외국인주식 소유가능
산업	1) 주류 (알콜) 제조업 2) 오염성 화학원료 제조	수산업	수산업장관의 특별허가 또는 인도네시아 현지기업과 합작필요
교통업	1) 육상터미널 건설 및 운영 2) 측량다리운영 3) 자동차 및 운영수단 테스트업 4) 네비게이터 운영 5) 선박교통정보시스템(VTIS) 6) 항공교통서비스	전력	최대 95% 외국인 지분소유가능
IT	라디오 및 위성관리 및 운영	산업	49% : 자동차정비업 95% : 설탕제조업 분야별 특별의무 조건
문화 관광업	1) 국영박물관 2) 유산/ 고고학 3) 기념물관리 4) 도박/카지노	국방업	49% : 폭발물원료 및 폭발성 산업원료 제조
		일반 산업	55% : 비즈니스 컨설팅 건설컨설팅, 67% : 1,000,000,000 루피아 이상의 위험한 건설 95% : 생수제조, 고속도로운영,
		상업	95% : 직접판매 (Direct selling)

⁷ 투자금지 및 제한목록 중 조합(Partnership)형식으로만 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뒤에 기술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는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만 투자를 하여야 하는바, 외국인은 조합에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⁸ 그러나 예컨대 아세안국가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를 세워 우회투자를 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다.

		교통업	49% : 컨테이너, 화물, 위험물, 특별 화물, 중장비, 국내 및 국제해 운업, 페리항만시설, 터미널 부대업, 항공운송업, 60% : 해상화물처리서비스 (CPC)
		IT	49% : 통신네트워크(케이블, 라디오), 인터넷서비스 공급, 멀티미디어 65% : 인터넷 상호접속 서비스(NAP) 95% :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시스템, 통신검사
		금융업	85% : leasing, 일반금융 (소비자금융, 신용카드, non-leasing) 80% : 손해보상보험, 생명보험, 재 보험업
		은행	특별허가 분야
		인력 공급업	49% : 국내인력공급, 인력트레이닝, 비정규직 트레이닝
		교육업	49% : 특수전공 (컴퓨터, 언어, 메이 크업) 교육기관
		의료업	49% : 한의원, 간호서비스, 의료기 구 대여 51% : 재활원 67% : 병원컨설팅, (침대 200개이상) 병원서비스, 클리닉, 전문의, 치과, 건강검진클리닉 및 서 비스 75% : 제약업
		경비업	49% 까지 외국인주식보유가능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MABOS PORLI 경찰청 특별허가 필요

Negative List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지나 제한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투자조정청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1] A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일정한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이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A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합작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2010년 대통령령에 따른 투자금지 및 제한목록에 따르면 의료장비의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의료장비의 임대업은 외국인의 지분이 49%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A기업은 인도네시아인과 합작으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례2] B기업은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수요가 많은 소규모 발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 B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규모는 10MW규모에 해당하는 발전소이다. 투자가 가능한가?
2010년 대통령령의 투자금지 및 제한목록에 따르면 발전업의 경우에는 1MW미만은 중소기업에 유보되어 있고, 1~10MW는 조합(Partnership)형태로만 투자를 할 수 있으며, 10MW 초과하는 발전업은 외국인이 95%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뒤에 기술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형태로만 투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조합에 참여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10MW규모의 발전업에는 참여를 할 수 없다.

4. 투자우대(Incentive)

투자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다.

4.1 신규투자 관세 감면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관련 품목목록(Master List)을 작성하고, 이를 투자조정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관세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의 수입관세만 납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재무부령 2000년 135호).

4.2 특정분야 및 지역에 대한 세금우대

특정분야 및 지역에 대한 세금우대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mor 1 Tahun 2007)에 의하여2007년 1월 이후 BKPM 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⁹중 15개 업종¹⁰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소득공제
고정자산 투자의 30% 상당액을 6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매년 5%).
사업생산개시일 기준으로 하며, 실사를 통하여 세무당국이 결정.

- 조기감가상각 인정

유형고정 자산 그룹	내용 연수	감가상각 및 이연상각	
		정액법	정률법
I. 비건축물			
1 유형	2 년	50%	100%
2 유형	4 년	25%	50%
3 유형	8 년	12.50%	25%
4 유형	10 년	10%	20%
II. 건축물			
영구	10 년	10%	—
비영구	5 년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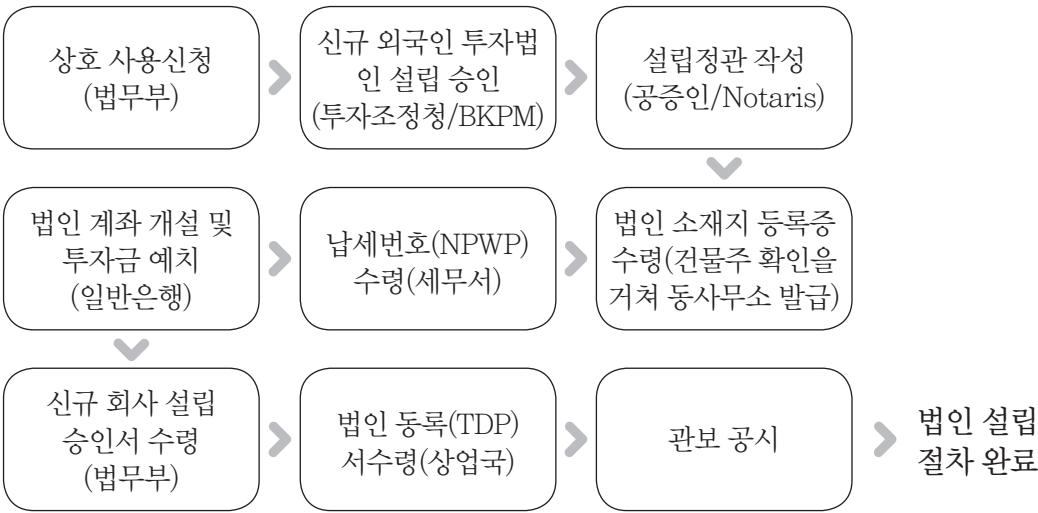
- 결손금 이월 기간 연장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4.3 외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08월 15일 외자유치를 촉진하여 위하여 법인세 면제 등 세제유 인정책을 발표하였는바¹¹, 이에 따르면 정유, 재생에너지, 기초금속, 석유화학, 통신장비 등의 사업분야 중 투자규모가 1조 루피아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하여 5년에서 10년간 법인세면제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5. 투자법인 설립절차

5.1 절차 개요



⁹ 신규투자기업 및 기투자업체의 확장투자도 포함한다.
¹⁰ 식품, 섬유, 제지, 화학, 제약, 고무, 도자기, 제철, 비제철, 기계, 전기모터/발전기/변압기, 전자, 육상교통, 조선, 비철금속산업.
¹¹ 국세청,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1년 12월, 59면.

5.2 상호사용신청

설립하려는 법인의 상호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를 법무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려는 상호가 인도네시아 내에 기존 회사의 합법적인 상호와 동일한 경우,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국가나 정부기관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회사의 목적과 사업행위와 무관하거나 상호없이 단지 회사의 목적만을 표기한 경우, 숫자나 의미없는 글자의 나열, 회사, 법인 또는 민사상 단체의 뜻을 가진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된다(회사법 제16조).

5.3 투자조정청에 대한 신청과 승인

투자신청은 투자조정청의 홈페이지¹²에서 제공되는 신청서 양식(투자등록신청서 참조)의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투자조정청에 제출 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투자신청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에는 영문 또는 인니어 정관, 사업활동계획서, 제3자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합작법인의 경우 서명된 합작계약서 및 인도네시아 파트너회사의 정관과 세무등록증 등이 있다.

투자 신청은 반드시 공증인 (Notaris)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투자조정청은 관련 서류 완비 여부와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적법하면 투자승인통지서(SP-PMA)를 발급한다.

5.4 설립정관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회사법 제15조).

- ① 회사의 명칭 및 주소
- ② 설립 목적 및 의미
- ③ 존속기간
- ④ 수권자본금 및 납입 자본금
- ⑤ 총 주식 수, 주식의 종류 (각 종류의 주식 수를 포함), 주식에 부여된 권한, 주식의 액면가액

⑥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인적사항

⑦ 주주총회 개최지 및 소집절차

⑧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교체 및 해임 절차

⑨ 잉여금 배분 및 배당 절차

5.5 소재지 증명(Domicili)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의 주소확인서를 받고, 이를 관할 Kelurahan¹³에 제출하여 소재지 증명서를 받는다.

5.6 납세번호 등록

회사의 납세번호(NPWP)를 등록하여야 한다. 외자기업(PMA)의 경우에는 자카르타의 PMA전담 세무서에서 납세번호등록을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법인 주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업자(Pengusaha Kena Pajak; PKP)로 등록하여야 한다.

5.7 계좌개설 및 자본금납입

자본금 납입을 하기 위하여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은행계좌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①투자승인서(SP-PMA), ②정관(AKTE), ③소재지증명서(Domicili), ④납세번호등록증(NPWP), ⑤법무부 법인설립승인서(Surat Keputusan Pengesahan), ⑥상업부의 법인등록서(TDP)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법무부에 법인설립신청을 하려면 해당회사의 자본금 납입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은행에서는 실무상 ①~④의 서류만 준비되면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자본금 납입 후 ⑤, ⑥의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¹⁴.

¹² www.bkpm.go.id/en

¹³ 한국의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이다.

¹⁴ 조용봉, 「인도네시아 금융실무 가이드북」, 2면.

[사례] 인도네시아에서 합작계약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 합작계약에서 3개월 이내에 자본금 납입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무부로부터 법인설립승인서를 받기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는 바, 인도네시아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계약시 자본금 납입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5.8 법무부승인, 법인등록 및 관보고시

공증인이 공증한 설립증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하여 법무부로부터 법인설립승인서를 받음으로써 법인은 설립된다.

이후 상업부에서 법인등록서(TDP)를 받고, 관보에 법인설립사실을 고시(BNRI)하여야 한다. 이는 일종의 공시절차로써 이를 모두 마치면 법인설립에 관한 절차는 종료된다.

[사례] A법인이 법무부로부터 설립승인서를 받았지만 아직 상업부로부터 법인등록서를 받지 못하고 법인설립이 관보에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명의로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계약이 적법,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회사의 설립은 법무부의 설립승인서를 받음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후 법인명의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적법, 유효하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등록서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등기·등록을 요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록서 및 관보고시를 모두 마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회사법제

1. 회사법의 연혁

1.1 상법과 주식회사법의 분리

인도네시아에서 상행위 전반에 관하여서는 1847년 네덜란드 통치 때 식민지 정부가 제정한 인도네시아 상법(Kitab Undang-Undang Hukum Dagang/KUHD/Wetboek van Koophandel, Staatsblad 1847)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식회사제도의 발전에 따른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상법 중 주식회사를 규정한 제1권의 제36조부터 제56조까지는 1995년에 제정된 주식회사법이 발효됨에 따라 1996년 3월 7일부로 실효되었다.

1995년 주식회사법은 주주, 이사 및 감사의 의무, 권리 및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주주, 이사 및 감사가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본연의 목적 이외에 다른 사적인 목적 등으로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고, M&A에 관한 규정 및 소수주주권 및 공익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을 두었다.

1.2 2007년 신 주식회사법 제정

이후 1995년 주식회사법에도 개선할 사항이 많았고, 주주, 이사, 감사의 책임 소재를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인식 등 회사제도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5년 주식회사법을 폐기하고, 2007년에 신 주식회사법(이하 “회사법”)을 새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고 있다.

2. 회사의 종류

인도네시아 상법에서는 회사를 주주의 책임에 따라 합명회사(Perseroan Firma), 합자회사(Commamditaire Vennootschap/CV),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1995년 회사법의 제정으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하여서는 회사법이 적용되지만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상법이 적용된다.

다만, 외자투자가 주식회사(PT)의 형태로만 허용되므로 이하 회사법제에 관한 논의는 주식회사로 한정하기로 한다.

3. 주식회사의 설립

3.1 발기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자연인, 법인, 정부의 승인을 얻은 외국인, 외국법인도 가능하다.

발기인 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조, 제15조).

3.2 최소자본금

회사법에 따른 회사의 최소자본금은 오천만 루피아(Rp. 50,000,000)이다(회사법 제32조). 최소자본금과는 별도로 투자조정청은 투자법 제4조¹⁵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경우 최소투자금을 정하여 그 이상의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자기업의 최소투자금에 대한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그 때 그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조정청이 결정하나 현재의 외자기업 최소투자금은 일백억 루피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법(Undang Undang Usaha Menengah dan Kecil Mikro 20, 2008)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자본금 기준을 일백억 루피아로 정하고 있는바, 기준은 국내 중소기업 보호의 취지에서 외자기업의 최소투자금이 현지 중소기업의 자본금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신규법인 설립 시 수권자본금의 25%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회사법 제33조).

[사례] A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대규모로 카사바를 제배하고자 한다. A회사는 적어도 합작회사의 지분의 51%이상을 취득하여 합작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나 투자금지 및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25ha이상의 카사바제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최대 49%로 제한되어

¹⁵ 투자법 제 4 조 “정부는 국가 및 지역 경제 개발 정도, 기업의 종류, 투자자본금, 기업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인도네시아 외국자본기업의 활동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인 합작 파트너의 지분 51% 중 11%는 A회사의 지분이나 이를 인도네시아 합작파트너에게 이른바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중에 인도네시아 합작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A회사가 명의신탁한 지분 11%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인도네시아 민법 제1320조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그 계약의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투자법상 지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분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신탁계약은 효력이 없고, A회사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이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3.3 현물출자

현금출자 이외의 다른 현물 내지 무형재산도 회사와 이해관계없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받아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만을 하는 경우 그 평가액이 최소자본금 기준을 넘어야 한다.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정관 서명일자나 주주총회 결의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1개 이상의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회사법 제34조).

3.4 주식

3.4.1 주식가액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액면 가액은 루피아로 표기하여야 한다. 주식인수계약이나 합작계약에서 주식 납입금을 달러화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은 루피아로 발행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A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인과 50:50의 비율로 합작을 하여 제철부산물을 처리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합작계약시 합작회사의 자본금을 미화 1천만달러로 하고, 주식은 1주당 미화 1천달러로 하여 1만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작계약을 토대로 투자조정청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투자승인을 받은 정관상의 합작회사자본금은 당시 환율 미화 1달러당 9,000루피아를 반영하여 자본금은 900억 루피아, 1주의 액면가는 9백만루피아로 되어 있다. 그 후 A회사는 합작계약에 따라 자본금 미화

5,000만달러를 합작법인에 납입하였다. 그런데 환율의 변동이 발생하여 A회사가 출자자본금을 납입할 당시의 미화 1달러당 루피아는 8,500으로 A회사가 실제 납입할 당시 납입한 루피아자본금은 450억루피아가 아닌 425억 루피아로 평가되었다. 이 경우 A회사는 부족한 25억루피아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가?

합작계약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이 단지 달러화로 표기된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합작계약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추가로 납입할 의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합작계약 등에서 납입자본금을 루피아 이외의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정관상 자본금과 실제 납입자본금 사이에 환차손이나 환차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제 납입 자본금이 투자계획당시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종류로는 의결권주식과 무의결권주식, 이사, 감사의 지명권부 주식,¹⁶ 상환주식, 전환주식, 우선배당주식, 청산시우선배당주식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각 종류의 주식은 혼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무의결권 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의 발행이 가능하다(회사법 제53조). 다만 상환주식과 같이 회사가 상환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고, 주식상환을 하게 되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발행주식자본금 감소절차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정족수와 같은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2/3이상 참석, 참석주주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하고, 정관상 발행주식수가 변경되므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회사법 제46조, 제47조).

또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상환을 위한 발행주식총수의 감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여 채권자의 반대여부 등을 묻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회사법 제44조).

¹⁶ 주식 수와 상관없이 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주식

3.4.2 주식의 양도

주주에게는 주식보유증명서가 발급 되어져야 한다(회사법 제51조).

회사법상 주식에 대한 양도는 주식 양도증서(Deed)로 하여야 하며, 양도증서 원본 혹은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주주명부에 양도의 사실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고, 주주로부터 주식 양도증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주식 양도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회사법 제56조).

한편, 인도네시아 회사법에 따르면 정관에 주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게 되므로, 주식양수도 는 정관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1] A회사는 리조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토지매입 대금으로 100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인 인도네시아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모두 양도담보형식으로 이를 양도받았다. 그러나 양도계약서는 증서형식(Deed)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다만, 당사자의 서명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나중에 차주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A회사가 담보로 받은 주식으로 차주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인도네시아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은 반드시 증서(Deed)형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당사자사이의 서명에 의한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에서 주주변동은 정관변경을 수반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차주의 협력이 없으면 정관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2] A회사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인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인도네시아 민법에 따르면 혼인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도 취득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우리나라의 부부별산제와는 다르다. 따라서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이 혼인 이후에 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므로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만일,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이를 이유로 주식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3.4.3 질권설정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은 주식양도와는 달리 증서(Deed)의 형식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공증을 하여야 하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의결권 등 주식에 대한 권리는 질권자에게 있지 않고 주주에게 있다(회사법 제60조).

3.4.4 주주명부

이사회는 회사 내에 주주명부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수량, 번호, 취득일자, 주식의 종류, 주식 당 납입금액,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의 성명, 상호, 주소, 담보권 취득 또는 등록일자 및 부동산으로 출자된 주식의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회사법 제50조).

4. 주식회사의 기관

4.1 주주총회

4.1.2 권한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기관으로 이사회 및 감사회에 부여된 권한 외의 사항(회사자산의 50% 이상 양도시 승인, 회사자산의 50% 이상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하여 회사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의결한다(회사법 제75조, 제102조).

4.1.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되는데 정기주주총회는 회계연도말로부터 6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회사법 제78조).

4.1.3 주주총회 개최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는 반드시 회사의 주소지 또는 회사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시/군)에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의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특정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방법 외에 전화나 화상통화 또는 다른 전자매체 방법으로도 가능하다(회사법 제77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는데 소집통지는 총회개최 전 14일 내에 해야 한다(회사법 제82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인정되나,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사례] A회사는 외국인 투자법인(PMA)로 3인의 외국인 주주가 있다. 긴급하게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외국인 주주의 참석이 불가능하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주주총회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을 통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화상통화 방식으로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없이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도 있다.

4.1.4 결의 요건(정족수)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한하며,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발행주식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주식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타 사항”으로 기재된 경우는 전체 주주가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동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참석 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의결될 수 있다(회사법 제76조).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으며, 재소집된 주주총회의 성립은 회사법과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2차 주주총회도 성원 미달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관할 지방법원에 새로운 성원 요건으로 주주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회사법 제86조).

정관 개정 안건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 주주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한 주식총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 개정 안건으로 소집된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 주주총회를 재 소집할 수 있으며, 재소집된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수의 3/5 이상 참석으로 개최되고, 참석주식 총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회사법 제88조).

합병, 결합, 인수, 분할, 파산 선고 신청, 회사 존속 기간 연장 혹은 해산 안건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는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상 참석과 참석주식 총수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 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으며, 재소집된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회사법 제89조).

주주전원이 서면으로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의결을 할 수 있다(회사법 제91조).

4.2 이사회

4.2.1 이사의 선임

이사회는 1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¹⁷,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회사법 제92조, 제94조).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사에 대한 내국인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은 없으나 이사선임 전 5년 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로서 파산선고에 책임이 있거나 또는 금융 범죄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회사법 제93조). 그리고 회사법상의 규정은 아니나 노동법상 외국인은 노무, 인사 담당 이사가 될 수 없다(노동법 제46조 및 노동부장관령 Nomor 40 Tahun 2012).

이사에 대한 선임, 교체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회사법 제94조).

¹⁷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사례] A회사의 이사이자 외국인인 갑은 동시에 B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고자 한다. 이러한 겸직이 허용되는가?

회사법상 이사,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사, 감사가 겸직을 하는 두 회사가 동종의 시장에서 밀접한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거나, 특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공동조절이 가능하여 독점이나 불공정경쟁에 이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4.2.2 이사의 대표권

인도네시아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표이사제도가 없다. 이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회사법 제98조). 따라서 만일, 이사가 수 인인 경우 어느 특정 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회사 간에 소송이 발행한 경우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당해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다음 순위에 따라 대표권이 인정된다(회사법 제99조).

① 다른 이사

② 이사 전체가 대표권이 없는 경우 감사위원회

③ 이사, 감사위원회 모두 대표권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권자 결정.

이사의 급여 및 수당 등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회사법 제96조).

4.2.3 이사회의 의무

이사회는 다음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회사법 제100조, 제66조).

① 인도네시아 일반회계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② 회사 활동에 관한 보고서
- ③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서
- ④ 회계년도 동안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들
- ⑤ 감사위원회 감사 업무 보고
- ⑥ 이사 및 감사 명단
- ⑦ 이사 및 감사의 급여 및 제 수당 명세

이사회는 주주 명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및 연례 보고서를 작성, 보존해야 하며, 주주가 서면으로 그 열람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회사법 제100조).

이사회가 한 회계연도에 1회 혹은 수 회에 걸쳐 전체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회사법 제102조).

4.2.4. 이사의 책임

이사가 불성실한 경영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전체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회사법 제97조).

다만, 다음의 사유를 입증하면 그 해당 이사는 면책될 수 있다.

- 회사의 손실 발생에 잘못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경영을 한 경우
- 손실을 가져온 경영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
- 손실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한 경우

이사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총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표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회사법 제97조).

4.3 감사위원회

4.3.1 감사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고¹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회사법 제108조, 제111조).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감사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¹⁹(회사법 제108조).

정관으로 대주주, 이사 또는 감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1인 혹은 그 이상의 독립 감사와 1인의 대표감사를 둘 수 있다(회사법 제120조). 대표감사를 두는 경우 그 권한과 의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4.3.2 감사위원회 소속 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산하에 감사1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 위원회, 급여 위원회, 인사추천 위원회 등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회사법 제121조).

4.3.3 이사에 대한 임시해임권

감사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사를 임시로 해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이사에 대한 임시해임통지가 있으면 그 해당 이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위원회의 이사에 대한 임시해임통지가 있으면 그로부터 30일 안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주주총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의 임시해임 결정을 인준하거나 취소한다.

주주총회에서 임시해임이 인준되면 당해 이사는 유효하게 해임되나, 이사의 임시해임

¹⁸ 상장법인, 공모펀드조성 및 사채발행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

¹⁹ 2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의사 결정방법에 관하여 회사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 에 별도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하도록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인준여부에 대한 결의를 하지 못하면 임시해임은 효력을 상실한다(회사법 제106조).

4.3.4 감사위원회의 회사 운영권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이사의 모든 권한,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회사법 제118조).

4.3.5 감사결격 사유 등

한편, 감사의 결격사유, 급여결정, 연대책임, 발행주식10% 이상의 주주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규정은 이사의 경우와 같다.

5. 회사에 대한 조사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주 또는 제 3자가 피해를 입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 주주 또는 제 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총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회사법이나 정관 또는 회사와 약정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회사법 제138조).

신청인이 주주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료 혹은 설명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부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6. 해산과 청산

6.1 해산

회사는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정관상의 회사 존속기간 만료, 법원의 해산 명령, 파산재산 부족으로 파산비용 지급이 불가하여 상업법원에서 파산선고가 취소된 경우,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재산으로써 지급이 불능인 경우, 회사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관계 법규에 의하여 해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산한다(회사법 제 142조).

법원에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공익을 위배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사가 회사해산을 신청한 경우,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해산을 신청한 경우, 주주, 이사, 감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이다. 회사해산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문 및 관보를 통하여 회사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채권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²⁰을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회사법 제147조).

6.2 청산

회사가 해산되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회사법 제142조).

회사는 해산이 되어도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인의 보고서를 주주총회나 법원에서 승인할 때까지는 법인격을 상실하지 않지만 청산절차 개시 후부터는 회사 외부로 나가는 모든 문서에 청산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회사법 제143조).

청산인은 회사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파산 선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거나 주소와 신분을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가 파산절차 없이 청산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회사법 제149조).

²⁰ 공고일로부터 60일.

III. 금융법제

1. 외환거래

인도네시아에서의 외환거래는 자유로운 편으로 투자법 제8조²¹의 취지에 따라 자본 및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과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

2. 해외차입금의 신고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중앙은행 규정(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12/1 Tahun 2010)등에 따라 중앙은행에 차입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1 해외차입 신고의 종류

2.1.1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12/1 Tahun 2010)에 따른 신고(Pinjaman Luar Negeri Perusahaan/PLN)

a) PLN의 정의 및 범위

PLN이란 은행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또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형태로 차입한 모든 형식의 기업채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모두 PLN에 해당된다.

- 비거주자에게 외화채권(주식공모 포함)의 발행
- 비거주자에게 루피아화로 채권 발행
- 이슬람법 원칙(Sharia Principle)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외환 또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로 채무부담(동규정 제 1조 제 1항).

b) PLN의 종류(동규정 제 1조 10항 및 11항)

PLN은 채무부담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뉘는데 1년 이하의 경우에는 단기 PLN,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 PLN이라고 하고, 그 신고절차에 차이가 있다.

c) 신고의무 및 절차

1. 장기 PLN의 사전신고 의무

장기 PLN을 얻을 계획이 있는 회사의 경우 차입을 하기 이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신고를 중앙은행에 해야한다.

- 외국채 사용에 대한 일년동안의 목적 및 계획
- 회사의 위기관리시스템(RMS)분석 결과
- 국내 또는 국제 신용평가 기구로부터 발행된 회사의 신용등급(이미 등급이 있는 경우만 적용)
- 재무비율(안정성 비율)
- 재무 보고서

장기 PLN 보고서는 중앙은행(BI)에 차입 당해 년도의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i) 회사가 장기 PLN의 계획이나 목적을 변경한 경우 ii)회사의 위기관리 시스템 분석이 변경되었거나 iii)3월 10일 이후에 PLN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당해 년도 7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단기와 장기 PLN의 사후 신고 의무

장기 또는 단기 PLN의 채무를 지는 회사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 마다 중앙은행(BI)에 재무비율(유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과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²¹ 투자법 제8조 제3항:투자자는 자본금, 이자, 배당금...(중략) 등을 외화로써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d) 제재

위에 언급된 신고의무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1.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Peraturan Bank Indoensia Nomor 12/24 Tahun 2010)에 따른 신고(Utang Luar Negeri/ULN)

a) ULN의 정의 및 범위

ULN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 또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진 채무(부채)를 의미한다. 차관계약이나 다른 계약 형식(채무증서, 상업신용 등)의 부채를 포함하지만 지로, 적금, 예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ULN은 PLN과 다르게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규율하는 차이점이 있다(동규정 제 1조).

b) ULN신고의 종류(동규정 제 7조)

1차 데이터 보고서 - 발행일, 만기일, 채권자의 성명 등과 같이 해외차입의 개요에 관하여 중앙은행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실행 데이터 보고서 - 신고의 토대가 되는 차관계약에 기초하여 해외차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c) 신고절차, 기간 및 기준

온라인 매체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ULN 보고서는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동규정 제 11조).

새로운 해외차입에 관한 1차 데이터 보고서는 해외차입 계약시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1차 데이터 보고서의 수정은 해외차입계약 발행시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외차입계약의 변경은 해당 변경사항이 확정된 지 10일 후에 중앙은행에 보고되어야 한다.

해외차입의 발행이나 해외차입계약의 서명날짜 전에 해외차입금이 출금된 경우에는 그 해외차입금이 출금된 지 1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실행 데이터 보고서는 매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중앙은행에 제출되어야 하며,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 달 2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개인 외에 모든 비은행 기업들은 차입금액과 관계없이 중앙은행에 신고의무를 지지만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신고의무를 진다.

1. 차입금액이 건당 이십만 불(US\$200,000) 이거나 이와 동일한 금액의 다른 통화
2. 차입금액의 합이 이십만 불(US\$200,000) 이거나 이와 동일한 금액의 다른 통화

d) 제재

보고서 제출의 지체,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동규정 제 7조).

1. 1차 데이터 보고서의 제출, 수정, 변경과 실행 데이터 보고서의 제출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매일 100,000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실행 데이터 보고서 제출의 불이행 또는 1차 보고서를 마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채입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된다.
3.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할 시에는 1,000,00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2.1.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13/20 Tahun 2011, Devisa Utang Luar Negeri)에 따른 신고

Utang Luar Negeri(외국채무)에 의한 해외차입금²²은 외환은행(Bank Devisa)을 통해 출금되어야 한다(동규정 8조).

외환은행이라 함은 중앙은행(BI)로부터 외환으로 은행거래를 할 자격을 취득한 은행을 말하며, 이에는 인도네시아에 소재를 둔 외국은행의 지점을 포함하지만,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어도 국외에 있는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법 13조에 의하면, 8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차용자는 1,000,000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동법 제 14조에 의해 벌금은 위 제 8조의 의무에 아무런

²² 회전자금과 재용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차입은 제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1.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Peaturan Bank Indonesia Nomor 13/22 Tahun 2011)에 따른 신고

본 규정 제 3조는 해외차입금이 위 DULN에 따라 출금되었음을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 절차,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는 ULN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DULN 출금 보고서는 중앙은행에 다음 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해외차입금의 출금이 외환은행에서 이루어 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례] 한국회사와 인도네시아회사가 합작하여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A회사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약 미화 5억 달러를 해외로부터 차입하기로 하고, 한국의 금융기관들과 신디케이드론 형식으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인출선행조건으로 차입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입계약을 체결할 때 자금인출계획과 선행조건의 충족가능시기를 잘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해외차입금의 사전신고의 경우 인출선행조건이 될 것이고, 사후 신고의 경우에도 인출후행조건이 되어 최초 인출 이후의 인출시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시기와 기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IV. 부동산법제

1. 토지제도 개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면서 토지 공유제를 채택하였다. 건국헌법(Undang-Undang Dasar Republic 1945) 제33조는 토지, 물, 천연자원은 국가의 지배에 있고,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건국헌법의 이념을 따라 1960년 기본농지법(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이하 "농지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토지의 권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인정하고, 관습법상으로 주민공동소유권(Hak Ulayat)을 인정하지만, 인도네시아 법인 및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사용권만 인정될 뿐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만 별도로 등기부를 두지 않고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다.

2.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

농지법이 규정한 토지에 대한 권리로는 소유권(Hak Milik), 경작권(Hak Guna Usaha), 건축권(Hak Guna Bangunan), 사용권(Hak Pakai) 등²³이 있고(토지법 제4조), 그 외에 집합건물법에 의한 건물소유권과 외국인의 주거소유권에 관한 정부령에 의한 주택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²⁴

2.1 소유권(Hak Milik)

토지소유권은 영구적이고 상속되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정부기관이나 특수공법인에게만 인정된다(농지법 제20조, 제21조).

²³ 그밖에 임대권(Hak Sewa), 수용권(Hak Membuka Tanah), 산림물 수확권(Hak Memungut Hasil Hutan)등의 권리도 인정된다.

²⁴ ANDREW I. SRIRO, 'SRIO'S DESK REFERENCE OF INDONESIAN LAW', DYAH ERSITA & PARTNERS, 649~651면

인도네시아 국민이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인이 상속(Warisan) 또는 증여(hibah)로 토지를 양도받는 경우에 1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하고 국가에 귀속된다(농지법 제21조). 그 외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소유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에 반납한 경우 등에도 소유권은 소멸한다(농지법 제18조, 제27조).

토지소유권은 매매, 증여, 교환, 유증 등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모두登記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농지법 제20조, 제23조, 제25조).

[사례] 한국 국적의 갑은 외국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소유권(Hak Milik)을 인도네시아 현지인 을의 명의를 빌려서 취득하기로 하고 을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매수하고 을의 명의로登記를 경료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갑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부동산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와 같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제도나 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 민법 제1320조는 탈법적인 목적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를 위하여 인도네시아인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신탁하여 두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2 경작권(Hak Guna Usaha)

경작권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농업, 어업,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인정된다(농지법 제30조).

경작권자가 위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1년 내에 경작권을 포기하거나 경작권 취득 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작권은 소멸하고 토지는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에 귀속된다(농지법 제30조).

경작권은 경작지가 최소 5 헥타르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25헥타르까지 인정되며, 법인의 경우는 중앙토지청이 허용면적을 정한다.

경작권은 최초에 최대 35년까지 부여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는데 1차 연장 시 최대 25년, 2차 연장 시 최대 3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농지법 제29조).

투자법에서는 투자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총 95년을 인정하고, 미리 일시에 60년까지의 기간을 부여하고, 추가로 35년의 갱신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경작권을 부여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투자법 제21조, 제22조).

이러한 투자법상의 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투자법 제22조).

-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증진에 이바지,
- 투자회수가 성격상 장기적일 수 밖에 없음,
- 투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아야 함,
- 정부 소유의 토지 소유권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 그리고
-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경작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登記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농지법 제28조, 제33조).

2.3 건축권(Hak Guna Bangunan)

타인소유의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농지법 제35조).

건축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은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인정된다(농지법 제36조).

건축권 보유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년 내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건축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농지법 제36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건축권이 무효로 된다(농지법 제36조).

건축권 취득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개발, 관리하는 토지상에 정부령 등에 의하여 건축권을 인정받거나 토지소유자와 증서에 의한 계약(Deed)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고, 이를 등

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농지법 제24조, 제37조, 제38조).

건축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최대 30년이고,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최대 20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에 있는 토지는 유효기간 만료 시 30년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농지법 제22조, 제35조). 투자법에서는 투자시설에 대해 총 80년을 인정하고, 미리 일시에 50년과 추가로 30년의 갱신을 허용한다(투자법 제21조, 제22조).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농지법 제35조, 제39조).

[사례] A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전자제품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필요한 토지를 모두 매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 일부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권(Hak Guna Bangunan)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다시 건축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토지제도가 매우 복잡하므로 토지매입 시 해당 토지가 투자계획에 맞는 용도로 승인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4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상의 수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세운 대표사무소, 외국대표나 국제단체의 대표, 정부기관이나 지방기관이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42조).

사용권 보유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년 내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농지법 제40조).

사용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개발, 관리하는 토지상에 정부령 등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서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농지법 제42조 내지 제44조).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최대 25년이고, 최대 25년간 연장할 수 있는데, 특히 국가소유

나 관리, 개발하는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은 특정목적에 의해 토지가 사용되는 한 그 유효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한제한 없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정부부처나 지방정부, 외국의 대표단이나 국제조직의 대표단, 종교와 사회복지기관에게만 있다(농지법 제41조, 제45조).

투자법에서는 투자시설에 대해 총 70년을 인정하고, 미리 일시에 45년과 추가로 25년의 갱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한다(투자법 제21조, 제22조).

사용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농지법 제52조 내지54조, 제39조).

2.5 집합건물소유권(Hak Milik Atas Satuan Rumah Susun)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하여 2011년 11월 10일 신법인 Undang Undang Nomor 20 Tahun 2011이 발효됨에 따라 종래의 집합건물법 Undang Undang Nomor16 Tahun 1985이 폐지되었다.

구법에서는 집합건물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신법은 집합건물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공공 집합건물 – 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집합건물
2. 특정 집합건물 – 특정한 요구에 의해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건물
3. 국가 집합건물 –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 공무원들을 위한 집합건물
4. 상업 집합건물 –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

신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은 다음의 권리가 부여된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7조).

- i) 소유권(Hak Milik)이 있는 토지
- ii) 건축권(Hak Guna Bangunan) 또는 사용권(Hak Pakai)이 설정된 국가소유의 토지
- iii) 관리권(Hak Pengeolaan)이 설정된 토지 위에 다시 건축권(Hak Guna Bangunan) 또

는 사용권(Hak Pakai)이 설정된 토지

공공집합건물과 특정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국가소유 토지 및 이슬람 증여(wakaf)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다(집합건물법 제 18조).

집합건물소유 증명서는 토지허가 별로 집합건물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SHM sarusun(Sertifikat Hak Milik Satuan Rumah Susun)과 토지허가 별로 집합건물법 제 18조에 해당하는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SKBG sarusun(Sertifikat Kepemilikan Banunang Gedung Satuan Rumah Susun)으로 구분된다.

[사례] 외국인이 현지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양도계약(Perjanjian Perikatan Jual Beli: PPJB)만으로 아파트의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토지법이나 집합건물법상 토지 및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등기부(Akta Jual Beli: AJB)에 명의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V. 비자

1. 단기체류허가(KITAS)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하여는 단기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1.1 관련 법령

외국인의 체류허가와 관련 법령으로는 1992년 3월 31일 발효된 이민법(Undang-Undang Nomor 9 Tahun 1992), 1994년 10월 14일 발효된 비자, 입국허가 및 이민국 허가에 대한 정부실행규정(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1994), 그 외 관련 장관령, 장관규정 등이 있다.

2011년 4월에 신이민법(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1)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인 5월부터 발효되었으나 당해 법령에 관한 실행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실무상 구법과 그 실행규정에 의해 이민관련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1.2 관련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비자, 단기체류비자 및 장기체류비자(KITAP) 등의 업무는 인도네시아 이민국(Keimigrasian Republik Indonesia)에서 담당하고 있다.

1.3 단기체류허가 종류 및 필요 서류

- 노동비자
회사의 스폰서 증명서 및 인도네시아 노동부(Departme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의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허가서
- 유학비자
입학 학교의 스폰서 증명서

- 거주비자
국제결혼 시 남편/부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소유자인 경우 남편/부인의 스폰서증명서 또는 남편/부인이 인도네시아 노동비자를 소유하는 경우 가족들은 남편/부인의 노동비자 및 근무회사의 스폰서증명서

1.4 절차

인도네시아 외 제3국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보낸 비자허가서(TELEX)를 수령한 이후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이민국에 입국신고와 단기체류허가서 발급을 신청한다.

단기체류허가기간은 1년으로 필요 시 매년 연장해야 한다.

2. 노동허가(IMTA)

2.1 법률

노동허가와 관련된 것으로는 인도네시아 노동법(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및 장관규정(Peraturan Menteri Nomor 7 tahun 2006), 그 외에 관련 집행규정이 있다.

2.2 관련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Departme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에서 산업분야별로 선진국의 신규기술 이전 및 훈련, 그리고 현지 근로자 보호정책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2.3 신청서류

- 외국인노동자고용계획서(RPTKA)
- 외국인근로예정자 여권사본
-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필요 시)

- 졸업장 사본
- 증명사진
- 고용계약서

3. 현지인고용의무

투자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투자회사는 현지 인도네시아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Keputusan Menteri Departmen Tenaga Kerja Nomor. KEP-20/MEN/III/2004) 제 6조에 따라 현지인 대체 고용부담금 명목으로 1년간 1,200달러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례] 한국 A회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B회사가 합작하여 인도네시아에 C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는 합작사업을 위해 기술을 전수하고 조업지도를 해 줄 감독관을 6개월 이상 C회사에 파견하려고 한다. 해당 감독관들은 고정적인 출퇴근과 사무실 사용, 사실상 관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및 조업지도에 대한 용역비는 C회사가 A회사에 지급하고 A회사는 파견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이를 감독관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감독관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기타 인사, 노무 관련 사항은 A 회사가 담당한다.

A회사에서 파견 나온 감독관들이 단기체류허가(KITAS) 및 노동허가(IMTA) 없이 지도 용역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장기체류하며 근무를 할 수 있는 지?

C사에 대한 현지인력 교육 및 노하우 이전 등의 지도, 교육, 세미나 등의 업무에 국한하여 출장을 오는 형식이라면 감독관들은 최장 60일의 Visa Kunjungan(B212비자)이라는 상용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독관이 단지 노하우 이전을 위한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 등 상용비자의 허용범위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출퇴근, 고정책상 사용, 관리역할 수행 등 정기 근무의 형태를 띠고, 용역비도 사실상 C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민법상 상용비자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로 판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인 감독관들이 사실상 C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법상 외국인 노동허가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써 외국인노동 허가제를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체류허가(KITAS) 및 노동허가(IMTA)없이 정상근무를 하며 장기체류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VI. 노동법제

1. 노동법 및 주요 법률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1951년에 제정(Undang undang Nomor 1 Tahun 1951)된 이래 1964년(법률 제12호), 1970년(법률 제1호), 1992년(법률 제3호), 1997년(법률 제25호)에 각 개정되었고, 2003년에 각 노동관련 법령을 통합한 노동법(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이하 “노동법”)이 노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외 2000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이 노동조합의 구성과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2004년에 제정된 노동분쟁해결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04, 이하 “노동분쟁법”)이 노사분쟁 및 조정, 화해, 소송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 근로관계

2.1 고용형태

2.1.1 정규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특별히 업무에 관한 제한은 없고, 최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지만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지급이 금지된다. 해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법 제60조, 제156조).

2.1.2 계약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은 한번에 종료되거나 임시적인 업무, 최장 3년 미만의 기간에 종료될 수 있는 업무, 계절적인 업무, 신상품, 새로운 서비스 또는 시험기간중인 제품 관련 업무로 한정된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며, 해고, 퇴직 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이며,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영역과 계약기간,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노동법 제58조, 제59조).

[사례] A회사에서는 현지인 갑을 1년의 한시적인 업무분야에 고용하기로 하되 우선 3개월간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일을 하고, 3개월 후 업무실적에 따라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3개월간 임금은 수습기간이므로 1,300,000 루피아를 주었다(A회사 소재지의 최저임금은 1,500,000루피아). 이 모든 사항은 상호 구두로만 합의하였다. 그런데 갑이 3개월 근무 후 A회사에서는 갑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노동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할 수 없고, 수습기간 조건을 둔 경우라도 이는 무효이다. 나아가 A회사는 갑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A회사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노동법상 최저임금제도 위반하였다. 결국 노동법상 A회사가 3개월 후 갑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고, 갑에게 3개월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600,000 루피아)만큼도 보상해 주어야 하며, 향후 임금도 최소 1,500,000루피아를 지급해야 한다.

2.1.3 업무위탁(용역, 하도급)

사용자는 회사업무의 일부를 도급계약 또는 서비스계약을 통해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각 용역, 하도급을 위탁 받은 회사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용역, 하도급회사의 근로조건은 업무를 위탁한 회사의 근로조건과 같아야 하고, 현행 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노동법 제65조).

다른 회사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주된 업무와 별개로 진행되는 업무
- ② 업무위탁회사로부터 직접적, 간접적 지시에 의하여 실행되는 업무
- ③ 전체적으로 회사를 지원하는 업무
- ④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업무

위탁을 받는 회사는 반드시 법인형태이어야 한다(노동법 제65조).

업무위탁이 업무조건 및 법인형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용역, 도급회사와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위탁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

[사례]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 업무위탁(Outsourcing)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노동법에서 업무위탁에 따른 용역인력은 회사의 생산 공정에 투입을 금하고 있다. 회사 생산공정 외 분야 (청소, 경비, 케터링, 특별 광업분야 등)에는 용역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다. 용역업무 인력이 생산공정에 투입이 되면 법적으로는 그 신분이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된다.

2.2.1 급여항목

급여는 기본급, 고정수당, 비고정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급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고정수당은 출근이나 업무실적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비고정수당은 출근이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급여이다.

급여구조가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본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총액의 75% 이상이어야 한다(노동법 제94조).

2.2.2 최저임금제

정부는 최저생계비 및 생산성,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주 또는 시군별,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각 지역별 지방정부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매년 협의를 통해 다음 해의 각 지역별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있다(노동법 제88조, 제89조).

2.3 근로연령

아동은 원칙적으로 고용될 수 없고, 다만 13세~15세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써 사업주가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의 서면 허가를 받고, 부모 또는 후견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에 방해 되지 않는 최장 3시간의 주간근무, 신체 보호도구 제공, 명확한 근로조건, 급료 수령보장을 준수하여야 고용이 허용된다(노동법 제68조, 제69조).

또한 14세 이상의 아동은 관계 교육기관의 직접적인 감독과 명확한 작업지침 및 신체보호를 위한 도구가 마련된 환경에서 회사내 작업이 학교수업내용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근로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작업이 허용될 수 있다(노동법 제70조).

2.4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주6일 근무시 1일 7시간, 주 40시간이고, 주5일 근무 시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야간에 여성근로자의 근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 ① 18세 미만이나 의사가 본인이나 태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진단한 임산부는 23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② 23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경우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사, 음료를 제공하고,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
- ③ 23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의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2.5 연차휴가

근로자가 연속해서 1년(12개월) 취업하면 최소 12일간의 휴가를 보장하고, 연속 6년간 근무하면 최소 2개월의 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근무 7년차, 8년차에 각 1개월씩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는 장기휴가를 가면 2년간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다(노동법 제79조).

2.6 사회보장(JAMSOSTEK)

인도네시아에는 JAMSOSTEK이라는 근로자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JAMSOSTEK은 사망, 상해 등 근로상 재해에 대한 보험의 성격과 노후저축, 의료보험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들은 의무적 가입이 원칙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입의무가 없다.

JAMSOSTEK	보험료	부담자
사망	임금의 0.3%	사용자
상해	임금의 0.24%~1.74%	사용자
노후저축	임금의 5.7%	사용자 3.7%/근로자 2%
의료	임금의 3%(미혼), 6%(기혼)	임의 보험

3. 근로관계 해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관계 해지 유형으로는 자진퇴사, 정년, 사망, 의병, 사원의 과오(중대 또는 경한 과오), 사법기관의 구속, 회사소유주 변경, 대량해고, 근로자요청 등을 들 수 있다.

해고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법 제156조).

근속기간	해고 보상금	근속기간	근속 보상금
1년 미만	1개월 급여	3년 이상 - 6년 미만	2개월 급여
1년 이상 - 2년 미만	2개월 급여	6년 이상 - 9년 미만	3개월 급여
2년 이상 - 3년 미만	3개월 급여	9년 이상 - 12개월 미만	4개월 급여
3년 이상 - 4년 미만	4개월 급여	12년 이상 - 15년 미만	5개월 급여
4년 이상 - 5년 미만	5개월 급여	15년 이상 - 18년 미만	6개월 급여
5년 이상 - 6년 미만	6개월 급여	18년 이상 - 21년 미만	7개월 급여
6년 이상 - 7년 미만	7개월 급여	21년 이상 - 24년 미만	8개월 급여
7년 이상 - 8년 미만	8개월 급여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8년 이상 - 9년 미만	9개월 급여	8년 이상 - 9년 미만	9개월 급여

손해보상금은 미사용연차휴가, 근로자채용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가족의 귀향 경비,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를 포함한다.

3.1 자진퇴사

근로자 본인이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노동법 제162조). 자진퇴사자는 손해보상금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자진퇴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3.2 정년

노동법에는 별도의 정년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다. 퇴직금으로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퇴직프로그램에 가입하였을 경우 당해 프로그램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손해배상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노동법 제167조).

3.3 사망

회사 내외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고보상금의 2배, 근속보상금의 1배, 손해보상금을 지급한다(노동법 제166조).

3.4 질병 및 장애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2배, 손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분쟁해결기관에서의 절차(합의, 조정 등)를 거쳐야 해고할 수 있다.

3.5 중대한 과오 또는 경한 과오로 인한 퇴사

근로자가 사기, 횡령, 절도, 증명서 위조, 마약, 폭행, 기밀누설, 업무 관련 징역 5년 이상의 형사법 위반행위 등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경우에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근로자의 자백, 회사의 권한자가 작성하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증명하는 사건보고서를 증명자료로 하여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진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에서의 합의 또는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과오에 의한 해고 시에도 손해보상금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자진퇴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대과오 이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3차에 걸쳐 경고장을 발급한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진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에서의 절차(합의, 조정 등)를 거쳐야 한다.

해고 시에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을 지급받는다(노동법 제161조).

3.6 사법기관에 의한 구속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소에 의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6개월 이상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근무불가기간이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노동법 제160조).

본건 해고 시에도 근속보상금과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7 회사 소유주 변경

회사의 형태변경, 인수, 합병, 소유주 변경이 이루어 지고,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다.

해고 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법 제163조).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3.8 폐업, 파산, 경영합리화로 인한 해고

회사가 2년 이상의 적자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경영합리화로 인한 폐업을 할 경우 또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또는 파산으로 인한 해고 시에는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경영합리화로 인한 해고 시에는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법 제164조, 제165조).

3.9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학대, 모욕, 협박, 위법행위를 하도록 근로자에 대한 선동지시, 3개월 이상 급여연체, 약속한 의무 불이행, 근로계약 사항 이외의 업무에 대한 이행 명령,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생명, 안전, 보건을 위협하는 업무 부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분쟁해결기관(노동부 중재 및 노동분쟁법원)에 근로관계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부의 중재나 노동분쟁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된다(노동법 제169조).

사용자의 잘못이 인정되면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의 잘못이 없으면 손해보상금과 자진퇴사 보상금(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경우)이 지급된다.

[사례] 모든 회사는 회사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가? 만약 회사규칙이 없는 경우 회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 KEP. 48/MEN/IV/2004) 제2조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회사규칙을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법 제188조에 근거하여 5백만루피아에서 5천만루피아의 벌금 형에 처해진다. 그 외에 회사규칙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임금, 근로 시간, 직책수당, 휴가 및 종교상여금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사항 별로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추가로 가해진다.

4. 노동조합

4.1 요건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이 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최소 10명 이상의 근로자에 의하여 결성될 수 있으나 동일 근로자는 1개 회사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에 소속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청에 설립자 명부, 정관과 운영세칙, 운영자 구성 및 이름을 제출해야 한다.

4.2 활동

회사는 노사 양측이 합의하였거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노조원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서는 노조활동의 종류, 허가절차, 허가된 노조활동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노조원에 대해 해고, 징직, 면직, 전보, 급여지급정지 또는 감액, 차별행위, 반노조 결성운동 전개 등의 방법을 통한 노조활동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재정

노동조합은 조합회비 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나 제3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노동분쟁 해결절차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 노동조합과 회사는 교섭을 통해 30일 이내에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데 위 기간이 도과하면 협상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노동분쟁법 제3조).

이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부에 분쟁해결신청을 하여 알선, 중재에 의한 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인에게 해결을 위임한다(노동분쟁법 제4조).

각 시군 관할 노동부 소속 알선인과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중재인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선과 중재판정을 종결하여야 한다(노동분쟁법 제4조, 제17조, 제25조, 제40조).

알선인이 알선한 안에 대해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방노동분쟁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분쟁법 제24조).

반면, 중재판정은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고 당해 중재판정은 관할 지방노동분쟁법원에 판결로 등록되며,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분쟁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노동분쟁법 제51조, 제53조).

노동분쟁에 관한 소송은 1심은 지방법원에서 50일 이내에 재판이 종료되도록 하고, 상소심은 대법원²⁵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재판이 종결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노동분쟁법 제103조, 제115조).

근로자의 중대과실에 의한 해고, 장기질병으로 인한 해고에 관련된 소송은 해고일로부터 1년 내에 제소하여야 한다(노동분쟁법 제82조).

²⁵ 고등법원에는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VII. 조세

1. 법인세

1.1 납세 의무자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은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며, 외국법인도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어떤 법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에 유형이 예시되어 있는 바, 다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 경영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 건축, 건설공사 장소 및 광물 천연자원 채굴장
- 인도네시아에서 보험계약을 하여 보험료를 수취하는 보험회사
- 인도네시아와의 조세조약을 통해서 고정사업장을 설정하는 경우
- 외국 법인을 대리하여 종속적인 형태로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본사 파견 기술자가 연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경우 동 본사 사원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례] 한국 A회사가 주주로 있는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B회사의 프로젝트를 위해 A 회사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 10명이 B 회사 사업장에 30일간 체재하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다른 기술자 10명이 교체해서 들어와 다시 30일간 체재하다 돌아가는 방식으로 파견 기술자들이 단일 프로젝트를 위해 교대로 파견 나와 용역을 수행하고 그 파견 기술자들의 총 체재기간이 합산하여 총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가?

183일 이상 체재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개개 기술자가 교체되어도 동일한 A회사 소속 기술자들로서 단일프로젝트를 위해 용역을 수행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그 개별 근로자들의 연속적인 체재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83일 이상이 되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1.2 적용세율

통상적으로는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1.3 손금불산입 비용(Disallowed deductions)²⁶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1) 법인제공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의 50%나 사택과 같이 복리후생의 성격을 지닌 경비.
하지만 회사가 그 영업소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비용이나, 직원이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비용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 2) 주주 또는 사용자 등이 사적 용도로 지출한 비용
- 3) 회사의 영리 행위와 무관한 선물 또는 기부금
- 4) 소득세 납부액

²⁶ 국세청, 앞의 책, 21면.

- 5) 추정세액 및 과징금 납부액
- 6) 이익배당금
- 7) 연금 또는 보험금 중 회사 부담분
- 8) 최종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관련된 비용
- 9) 면세대상인 소득과 관련된 비용
- 10) 주식으로 분할되지 않은 파트너십과 협회의 출자에 대한 급여 또는 보수

2. 개인소득세

2.1 납세 의무자²⁷

세법상 다음의 사람을 개인거주자로 간주한다.

- 1) 인도네시아 국내 주소를 가진 자
- 2) 인도네시아 거주기간이 12개월 이내에 183일을 초과하는 자

연간과세소득	세율	Tax (루피아)
50,000,000 루피아 이하	5%	2,500,000-
50,000,000 루피아 초과 200,000,000 루피아 이하	15%	30,000,000-
200,000,000 루피아 초과 250,000,000 루피아 이하	25%	62,500,000-
250,000,000 루피아 초과	30%	해당과세소득의 30%

- 3)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의도를 가지고 거주하는 자

개인 비거주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20% 원천세가 적용된다.

구분	금액 (루피아)
본인공제	15,840,000
배우자 공제	1,320,000
부양자 공제 (최고 3인까지)	1,320,000
의무관련 공제 (총 소득의 5%한도 내, 1개월 최고 500,000루피아-)	6,000,000
JAMSOSTEK의 직원 부담금 (총 소득의 2%)	총액
연금기금의 정립금액	2,400,000
(총 소득의 5%한도 내, 최고 1개월 200,000 루피아-)	

2.2 적용세율

일반세율

2.3 소득공제

다음과 같은 연간소득공제(Penghasilan Tidak Kena Pajak/PTKP)를 적용한다.

3. 원천징수세²⁸

각종 원천세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Undang-Undang Pajak Penghasilan/PPh)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구분된다.

²⁷ 국세청, 앞의 책 29면
²⁸ 국세청, 앞의 책, 37면.

1) 소득세법 제 23 조 (거주자간 거래이익에 대한 소득세)

거주자에 대하여 15% 또는 2%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는데 각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5%	2%
• 배당 •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스왑프리미엄 및 보증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 포상금 및 상금	• 토지 및 빌딩 등의 자산 임대 • 기술 서비스 • 자문 서비스 • 감정 서비스 • 회계, 기장 및 증명서비스 • 디자인 서비스 • 시추 서비스(고정사업장 수행제외) • 석유가스채취관련 지원서비스 • 광물 서비스 • 삼림채벌 • 인력공급/아웃소싱 • 중개서비스 • 필름더빙서비스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서비스 • 설치용역서비스(건설업라이선스 소유 건설 회사의 경우 제외) • 유지보수서비스(건설업라이선스 소유 건설 회사의 경우 제외) • 위탁제조서비스 • 이벤트조직서비스 • 정보전파를 위한 미디어 등에 장소나 시간 제공 서비스 • 해충구제서비스 • 케터링서비스 • 경영 서비스 • 평가 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 폐기물처리 서비스 • 증권거래서비스 • 패키지서비스 • 청소서비스

2) 소득세법 제 26 조 (비거주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비거주자가 거주자, 단체 및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로부터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득의 20%가 원천세율로 적용된다.

- 배당
-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및 보증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임차료, 및 자산 사용에 대한 지불
- 각종 서비스료
- 포상금 및 상금
- 연금 및 기타 정기적 지불
- 스왑프리미엄 및 기타 헷지거래
- 채무면제이익
-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의 세후수익

4. 부동산세제²⁹⁾

4.1 토지 및 건물세(Pajak Bumi dan Bangunan/PBB)

토지 및 건물세(Pajak Bumi dan Bangunan/PBB)는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다. PBB의 세율은 0.5%로 책정되어 있다. 과세대상의 부동산과세적용가치(Nilai Jual Kena

²⁹⁾ 국세청, 앞의 책, 32 면.

Pajak/NJKP)에 의해 특정 과세대상에 대한 실제 세금이 산정되며, 부동산과세적용가치는 부동산과세적용가액(Nilai Jual Objek Pajak/NJOP)에 따라 결정한다.

4.2 부동산 거래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자의 간주이득이 부동산거래세의 과세대상이며, 통상적으로 실제양도가액 또는 부동산과세적용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의 5%가 세율로 부과된다. 다만,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택 및 아파트를 단순 취득 할 때에는 1% 세율이 적용되며, 정부기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 관료가 관련 서류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취득세의 지불이 완료되기 전에는 권리이전증서에 공증인의 공증서명을 받을 수 없다.

4.3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의무사항

부동산 명의 이전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그와 관련하여 세납납부의무(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가 발생한다.

매매, 증여, 상속 및 법인에 대한 기증, 등기분할, 경매, 법원명령 실행, 기업인수, 합병 등과 같은 부동산 명의이전 시의 부동산취득적용가액(Nilai Perolehan Objek Pajak/NPOP)을 기초로 하며, 원칙적으로는 취득가액이 만 6천만 루피아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을 통하여 토지 건물을 취득 한 경우에는 각 지방 정부가 면세가액 3억 루피아 이하의 범위에서 면세범위를 결정한다.

5. 부가가치세³⁰

5.1 납세의무자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SPPKP)이 필요하며, 연간 매출액 6억 루피아 이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5.2 과세대상

- 과세지역 내에서의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 과세지역 내에서의 과세대상 용역의 양도
- 과세지역 내에서의 과세지역 밖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무형재화 사용 및 소비
- 과세지역 내에서의 과세지역 밖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용역 사용 및 소비
-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유무형 재화의 수출
-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용역의 수출
- 계약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권리양도
- 운송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중개상이나 경매관에 대한 과세 대상 재화의 양도
- 과세대상 재화의 자가소비 또는 무상제공
- 법인 청산 시 잔존하는 재고자산 형태의 과세대상 재화와 특정자산
- 본지점 또는 지점간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위탁품의 양도
- 이슬람 금융 구조하의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³⁰ 국세청, 앞의 책, 47면.

5.3 세율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나, 정부규정에 의거하여 최저 5%에서 최고 15%까지 부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재화, 무형재화 및/또는 용역의 수출은 0%의 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재화 (Non-Taxable Goods)	면세용역 (Non-Taxable Service)
- 원재료 (원유, 지열에너지, 모래 및 자갈, (가공이전)석탄, 철광, 구리광, 금광, 은광, 알루미늄광) - 기초생활품 - 호텔,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료 - 화폐, 금괴, 어음	- 의료보건용역 - 사회봉사용역 - 호텔용역 - 금융/보험/종교/교육용역 - 예술 및 공연용역 - 육상/해상/항공 대중교통 - 인력용역 - 주차용역 - 유흥세가 부과되는 유흥용역 - 주택임대용역 - 광고를 제외한 방송용역 - 캐터링 서비스

5.4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PKP)로 지정된 회사나 개인은 매월 사업활동을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별로 계산되며, 결과적으로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은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관할세무서(Kantor Pelayanan Pajak/KPP)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5.5 부가가치세 징수구조

1) 매입세액공제제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1개월 단위로 계산해서 납세하며, 공급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거나 이월된다.

2) 가산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PPKP)의 미등록자인 경우, PPKP 미등록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가 불완전하게 발행된 경우에는 가산세 2%가 부과되며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거나 면세된 경우 원세액의 100%를 가산 징수한다.

5.6 부가가치세 환급

매 회계연도 말에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안에 근거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서류는 환급계산에서 제외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환급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환급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여기서 성실납세자라 함은 체납과 같은 범죄사실이 없고 신고기한을 준수한 자를 말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 수출자, 부가가치세 징수자에게 공급하는 자, 제조 이전단계 회사,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 공급자 등과 같은 특정납세자의 경우에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매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6. 특별소비세

2010년 4월 10일에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규정이 발효됨으로써 신규 특별소비세율이 200%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특별소비세는 제품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만 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7. 수입관세³¹

7.1 수입관세율

인도네시아는 ASEAN-Korea FTA(AKFTA)로 인해 한국 수입제품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고 있다.
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가격의 0%에서 150%까지 부과된다.

구분	품목	관세율(%)
자동차	상업용	0~50
자동차 부품		0~10
선박	선박 및 선박구조물	0~5
전자제품		0~12.5
신발류		5~25
음료, 주류	에틸알코올, 맥주, 와인 등 기타음료	5~30 14,000 루피아 ~ 125,000 루피아/리터
에센셜 오일 및 합성수지	방향제	5~150
농산품	동식물	0~25
Textile, 직물제품 및 액세서리	가방, 의류, 액세서리	5~15
기타	화학제품, 약제류, 플라스틱, 고무 등	0~25

7.2 수입면허

인도네시아 관세구역으로 재화를 수입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관세청 등록번호(Nomor Identitas Kepabeanan/NIK)와 인도네시아 상업부(Departmen Perdagangan)에서 발행하는 수입자 등록 번호(Angka Pengenal Importir/API)를 소지해야 한다.

8. 불복절차³²

8.1 이의제기

부당 또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서는 과세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 사유와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계산한 세액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불복신청을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결정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불복청구가 기각되게 되면 그 제재로서 미납세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불복신청 당사자가 조세법원에 불복신청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국세청의 기각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이 벌금은 유예된다.

8.2 소송제기

- 1) 조세법원
과세대상자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법원에 소를 제기 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법(Undang- Undang No. 14 Tahun 2002, 제 36조 제4항)에서는 미납세액의 50%를 지불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 조세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은 12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조세법원의 결정은 최종 판결로 간주되므로, 그 판결에 의해 정해진 미납세액에는 100%의 할증료가 부과되게 된다.
- 2) 대법원 상고
원칙적으로, 조세법원의 판결은 최종판결로 간주되지만,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다.
- 소송 상대방의 위증, 사기, 거짓 증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 조세법정에서 중요문서증거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다른 판결이 가능한 경우

³¹ 국세청, 앞의 책, 54면.
³² 『Indonesian Tax Book』, PWC(Pricewaterhousecooper) 2011, p.51.

- 증거들이 이유 없이 고려되지 않거나 무시된 경우
-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
- 현행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9. 이중과세방지협약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1988년 11월 10일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체결되었고, 1989년 5월 3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제 23조에 따르면, 한-인 조세협약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거주자는 전체 과세소득에서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환산한 세무액의 범위 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납부된 세무액을 한국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아래와 같다.

항목		세율
배당	지분 25% 이상	10%
	지분 25% 미만	15%
이자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	0
	기타 금융기관	10%
사용료		15%

VIII. 분쟁해결

1. 사법제도

1.1 법원의 종류

인도네시아의 사법부는 지방법원(Pengadilan Negeri), 고등법원(Pengadilan Tinggi) 및 대법원(Mahkamah Agung)으로 이루어져 있다.

1.2 심급제도

1심 재판은 지방법원, 2심(Banding) 재판은 고등법원이 관할하는데,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은 인도네시아 주 또는 행정도시 별로 운영되고 있고, 재판부는 1인의 재판장(Ketua Hakim), 2인의 판사(Hakim) 그리고 1인의 서기관(Panitera)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3심(Kasasi)과 4심(Peninjauan Kembali) 재판은 대법원의 관할이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14 Tahun 1985) 67조에 의하여 대법원의 3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재심에 해당하는 항소(PK)를 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위증, 사기, 거짓 증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가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우
- 청구된 것이 아닌 사항 또는 청구된 것보다 초과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 Nebis in idem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된 판결이 난 경우
- 소송안건을 심리하지 않고 판결에서 유탈한 경우
- 명백한 판사의 실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3 민사법(Kitab Undang–Undang Perdata)

인도네시아는 독립 이후 민법(Kitab Undang–Undang Perdata)만을 제정하였고,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은 독립 이전에 제정된 법률들(RV, HIR, RBG)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1) RV(Reglement of de Rechtsvordering)는 민사소송법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럽인(orang 'Eropa') 및 아시아인('Timur Asing')에게 적용되었다.
- 2) HIR (Herzien Indonesis Reglement)은 자와(Jawa) 및 마두라(Madura)지역에 적용되었다.
- 3) RBg (Rechtsreglement Buitengewesten/Reglemen Untuk Daerah Seberang (Stbl. 1927 No. 227)) 자와(Jawa) 및 마두라(Madura) 외의 지역에 적용되었다.

현재 독립이전(구 네덜란드 식민시절)의 행정지역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법규들은 지역 구분 없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적용된다.

2. 중재제도

상거래 또는 합작투자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해결을 사법부 관할 법원에 의뢰하지 않고 중재인(제 3자/Mediator)을 선정하여 해결하는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중재위원회 관련법률(Undnag-Undang No. 30 Tahun 1999)은 1999년 8월 12일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 중재기관은 정부기관이 아닌 사립단체들로서 중재기관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인도네시아 중재원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 2)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h Indonesia/ BAMUI)
- 3) 독립분쟁 해결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

3. 외국판결, 중재판정의 집행문제

인도네시아는 1945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상에 의한 독립주권국가로서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이 아닌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거나 외국판결의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³³.

[사례] 한국에 소재한 A회사가 인도네시아 소재한 B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B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그 소유주식에 대해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받았다. 이 계약서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B 회사가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자 A회사는 B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질권실행을 통지하고 주식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한국 서울중앙지방법 법원에 B회사 및 주주를 상대로 질권실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A회사는 이 판결에 기해 인도네시아에서 B회사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A회사가 인도네시아 법원에 B회사 및 주주들을 상대로 하여 질권실행청구 소송 등을 제기 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정된 민사소송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판결을 받아도 이를 인도네시아에서 승인하거나 그 판결에 기해 집행을 하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A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한국의 판결문을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A회사가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위반이 될 수가 있다. 질권설정계약에서 분쟁에 대한 관할합의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법원에서 관할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거래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준거법이나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뉴욕협약 제3조에 따라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는 인도네시아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재판정 승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재판정의 승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최종적으

³³ 한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로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재판을 하여 결정하게 된다.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간에 한국어로만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만일 계약서에서 관할법원 및 준거법을 한국으로 합의하였다면, 한국법원에서 사법적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인도네시아를 관할 및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 또는 관할 및 준거법을 정하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법원에서 분쟁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도네시아어로 된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IX. 참고문헌

- 1. 국세청,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1년 12월,
- 2. 조용봉, 「인도네시아 금융실무 가이드북」
- 3. ANDREW I.SRIRO, 「SRIO’S DESK REFERENCE OF INDONESIAN LAW, DYAH ERSITA & PARTNERS
- 4. 「Indonesian Tax Book」, PWC(Pricewaterhousecooper) 2011

부록 : 투자등록신청서 양식

LAMPIRAN I.

PERATURAN KEPALA BKPM
NOMOR : TAHUN 2009
TANGGAL :

Bentuk Permohonan Pendaftaran Penanaman Modal
(*Investment Registration Application Form*)

PERMOHONAN PENDAFTARAN PENANAMAN MODAL
(*APPLICATION FOR INVESTMENT REGISTRATION*)

Permohonan PENDAFTARAN PENANAMAN MODAL ini diajukan kepada Kantor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PTSP) untuk rencana penanaman modal dalam rangka Undang–Undang Nomor 25 Tahun 2007.
This INVESTMENT REGISTRATION is herewith submitted to the One Door Integrated Services Office for the purpose of investment under the Investment Law No. 25 of 2007.

I. KETERANGAN PEMOHON
DETAILS OF APPLICANT

Jika perusahaan belum berbadan hukum maka pemohon diisi dengan data seluruh calon pemegang saham perusahaan yang akan didirikan.
If the company is not yet incorporated, then the applicant data should be filled out with all participant’s data of the company which is about to be established.

1. Nama Perusahaan (tentatif/tetap)*)

:

Name of Company (tentative/fixed))*

:
2. Nama Pemohon

:

Name of Applicant

:
3. Penyertaan Dalam Modal Perseroan

Shareholding (s)

Hanya diisi untuk perusahaan penanaman modal asing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y only

a. Peserta Asing <i>Foreign Shareholder (s)</i>	Alamat dan Negara Asal <i>Address and Country of Origin</i>	Rp/US\$ *)	% **)
Sub Total			
b. Peserta Indonesia <i>Indonesian Shareholder (s)</i>	Alamat <i>Address</i>	Rp/US\$ *)	% **)
c. Total (a + b)			100%

*) *coret yang tidak perlu/stripe which is not applicable*

**) *prosentase adalah atas nilai nominal modal saham bukan lembar saham/
the percentage is upon the nominal share of capital not sheet of share*

4. Alamat Korespondensi :
.....
Correspondence Address :
.....
• Nomor Telepon :
Phone number :
• Faksimili :
Faxmile :
• E-mail :
E-mail address :

5. Akta Pendirian dan Perubahannya (Nama Notaris, Nomor dan Tanggal) dan
Pengesahan Menteri Hukum dan HAM (Nomor dan Tanggal)

:
Hanya diisi jika perusahaan sudah berbadan hukum

Company’s Deed of Establishment and its Amendment (Name, Notary and
Date) and Legalisation from the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Number
and Date)

:
Should be filled out if the company is already incorporated

II. KETERANGAN RENCANA PENANAMAN MODAL
DESCRIPTION OF INVESTMENT/PROJECT PLAN

Jika penanaman modal yang direncanakan akan mencakup lebih dari
satu bidang usaha dan/atau direncanakan akan berada di lebih dari satu
Kabupaten/Kota atau lebih dari satu Provinsi, maka rencana kegiatan (bidang
usaha, lokasi , jenis/kapasitas produksi dan nilai investasi) harus dirinci

untuk setiap bidang usaha dan/atau untuk setiap lokasi.
If the proposed investment/project is planned to cover more than one
sector/ line of business and/or planned to locate in more than one Regency/
Municipality or more than one Province, then the investment/project plan (line
of business, location, type/production capacity and investment funds) should
be specified for each sector/ line of business and/or for each location.

1. Bidang Usaha :
Line of Business :

2. Lokasi Proyek
Project Location
Kabupaten/Kota :
Regency/Municipality :
Provinsi :
Province :

3. Produksi Per Tahun :
Production per Year :

Jenis Barang/Jasa Type of Goods/Services	KBLI (Standard Classification of Indonesia Business Field)	Satuan Unit	Kapasitas Capacity	Keterangan Remark
---	--	----------------	-----------------------	----------------------

4. Investasi (Rp/US\$)* :
*) coret yang tidak perlu
Investment (Rp/US\$)* :
*) coret yang tidak perlu

PERNYATAAN
DECLARATION

Kami menyatakan bahwa permohonan ini dibuat dengan benar, ditandatangani oleh seluruh pemohon atau kuasanya di atas materai yang cukup dan sewaktu-waktu dapat dipertanggungjawabkan termasuk dokumen/ data baik yang terlampir maupun yang disampaikan kemudian.

We acknowledge that this application has been properly and duly executed, signed by all applicants or theirs representative which is authorized by the Power of Attorney with sufficient stamp duty and We (the participants) are responsible for its accuracy,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including all attached documents/ data or submitted later.

.....
Pemohon,
Applicant
Materai Rp. 6.000, –
Stamp Duty of Rp. 6.000,00
.....

Tandatangan dan Nama jelas
Name and Signature

시 리 즈 목 록

국가	제목	법무법인	저자	사무소
중국 I	중국 투자 · 기업	광장	이상기 오승룡 최광호	광장-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삼원교 서광서리 갑1호 동역대하(제3차업)B좌 1802실 86-10-5822-0747 mail-bj@leeko.com
중국 II	중국 세법	세종	최병선 장대훈 정천주	세종-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운로 36호 국항빌딩 10층 1008호 86-10-8447-5343 china@shinkim.com
중국 III	중국 공정거래	세종	최병선 장대훈 김도현 (前세종 변호사)	세종-상하이 중국 상해시 장녕구 선하로 319호 원동국제광장 A동 8층 808호 86-21-6235-0411 china@shinkim.com
베트남 I	베트남 투자 · 조세 · 노무	율촌	양은용 배용근 강수구 한윤준 안우진 Tran Anh Dung	율촌 – 하노이 Unit M01, Atlanta Place, 49 Hang Chuoi, Hai Ba Trung District, Hanoi, Vietnam 84-4-3972-8123 eyang@yulchon.com 율촌 – 호치민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84-8-3911-0225 eyang@yulchon.com
베트남 II	베트남 부동산 · 건설	지평지성	김상준 변희경 한승혁 김주현	지평지성 – 하노이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84-4-6266-1901 hanoi@js-horizon.com 지평지성 – 호치민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84-8-3910-7510 hcmc@js-horizon.com
캄보디아	캄보디아 회사 · 세무 · 투자	지평지성	이행규 유정훈	지평지성 – 캄보디아 (현지상호명: In 3 Horizon Attorneys at Law)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02-6200-0962(인터넷전화), 855-23-726-897(사무실) yoojh@js-horizon.com eak@js-horizon.com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 카자흐 스탄 · 우즈베키 스탄 투자법제	율촌	이화준 문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528-5200 mail@yulchon.com
미얀마	미얀마 투자법제	율촌	양은용 배용근 강수구 안우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528-5200 mail@yulchon.com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법제	에이팩스	차지훈 이해왕	에이팩스 – 자카르타 CEO SUITE JAKARTA Wisma GKBI 39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Tel. 62-21-5799-8151 Internet Phone. 070-8230-6033 jhcha@apexlaw.co.kr, hwlee@apexlaw.co.kr

저 자 약 력

차지훈 변호사

학 력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2002. 미국 뉴욕주 변호사

경 력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5.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 Visiting Scholar

2001.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KBS 자문변호사, 대법원 사법제도개혁위 전문위원, 경찰청 인권위원 등 역임

이해왕 변호사

학 력

1991. 연세대 법대 졸업

1998. 연세대 법과대학원 수료(법학석사)

경 력

1996. 공군장교 복무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06. 고양시, 과천시, 대한도시가스 법률자문변호사

2006. 법무법인 장한(C&K) 변호사

2006. 법무법인 렉스(LEX) 변호사

2008.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09.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및 변리사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Investment & Business Guide

인 쇄	2013년 1월
발 행	2013년 1월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 화	02) 2110-3661
팩 스	02) 504-1378
전자우편	ildhd@moj.go.kr
인 쇄	에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주)
	02) 756-5171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62-01